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 안 번 호	12890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4건의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59	서미화의원	2024. 9. 3.	2024. 11. 14.
	6659	차지호의원	2024. 12. 18.	2025. 2. 18.
	7446	한지아의원	2025. 1. 10.	2025. 2. 18.
	9932	김예지의원	2025. 4. 17.	2025. 8. 18.

나.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8. 20.)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8. 27.)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8. 27.) 비용추계 생략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에 대하여 성별·나이·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이나 직업, 건강, 자살자의 자살원인 등과 같은 사항도 연장선에서 실태조사의 항목으로 필요함.

또한,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자살자의 심리·행동·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살의 원인을 추정·검증하고 그에 기반하여 주변인의 죄책감과 고립감을 완화시키며 자살예방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함.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전담인력도 1명뿐인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관서의 장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및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으로서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심리부검의 대상자를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함(안 제11조의2 제1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득, 직업,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중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를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살시도자등”을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살시도자등”을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로, “그 자살시도자 등”을 “자살시도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을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을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을 “긴급구조기관의 장은”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 등”을 “절차,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2.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삭제 요청
3.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한 긴급구조 신고 또는 유통자에 대한 신고 등 사후관리
4.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2. ~ 4.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소득, 직업,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에----------.----------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자살시도자등----------.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의 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생 략)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절차,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
<신 설>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2.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삭제 요청 3.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한 긴급구조 신고 또는 유통자에 대한 신고 등 사후관리 4.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